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69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정희용 · 박준태 · 백종헌
김기웅 · 김선교 · 김상훈
최수진 · 박충권 · 이인선
박덕흠 · 조승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

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⑨ (생 략) <u><신 설></u>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 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 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 히 처리할 수 있다.</u>